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5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1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9. 2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9. 29. 접수 제71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2468호로 공사대금(이하 ‘이 사건 공사대금’이라 한다)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22. 9. 2. ‘C은 원고에게 56,08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이에 C이 대구지방법원 2022나324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, 항소심 법원은 2023. 12. 20.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, 위 판결은 2024. 1. 10. 확정되었다.

다. C은 2022. 9. 27. 피고와 사이에,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라.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9. 29. 접수 제7109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,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피고는, 원고가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·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사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C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,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(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3841 판결,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,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

이유 없다.

나. 사행행위,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추정

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),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,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) 피고는,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대구 달성군 D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2,000만 원에서 1억 3,000만 원이며,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0,000,000원은 피고가 조건부로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

아니어서 위 부동산이 C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또한 피고는, 피고는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, C은 피고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였는데, C이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위 대여금 약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9. 29. 접수 제71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승혜

별지